

# 실험동물실 운영 규정

제정일 : 2015.07.01.

담당부서 : 실험동물실(760-5238)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, 동물실험 및 관련 부속시설을 관리하고, 동물실험 관련 지원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반입, 사육관리, 계통보존 및 폐기처분을 수행하여 생물의학연구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원주캠퍼스(매지)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모든 동물의 관리 및 실험에 적용되며, 실험동물실의 업무 담당자 및 원주캠퍼스의 실험동물 연구 분야 관련자로서 동물실험실을 출입하고자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'실험동물'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.
2. '동물실험시설'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'실장'이라 함은 실험동물 및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.
4. '운영위원회'라 함은 실험동물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물실험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.
5. '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: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, 이하 'IACUC'라 한다)'라 함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동물실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허가하는 기구를 말한다.

## 제2장 조 직

제4조(실험동물실장) 실험동물실의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실장을 두고, 제3장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기초하여 실험동물실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제5조(조직 및 직무) ① 실험동물실에는 업무지원을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.  
② 전항의 조직에는 직원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

있다.

③ 전항의 조직은 실험동물실의 운영,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실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실험동물실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험동물실장의 추천으로 원주부총장이 임명한다.

1.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
2.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동물실험시설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1.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,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이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제4장 재 정

제10조(재정) ① 실험동물실의 재정은 교비,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.

- ② 실험동물실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- ③ 실험동물실의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는 실장이 수행한다.

제11조(회계) 실험동물실의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5장 실험동물 이용윤리

제12조(동물복지의 고려) ① 실험자는 실험동물을 이용한 실험 계획의 수립 시,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동물 실험을 가능한 모든 대체 수단의 강구를 통하여 최소화하는 등의 동물복지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실험자는 실험 중인 실험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마취약의 투여, 보정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, 실험동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육관리) ① 실험동물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(이하 '관리자'라 한다), 실험자 및 사육자는 동물실험 시설 및 설비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행하여 최상의 사육 환경조건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, 실험자 및 사육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여 적절한 급이, 급수 등의 사육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실험종료 후 등의 처치) ① 실험자는 실험이 종료되거나 혹은 중지된 실험동물을 처분 시 신속히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을 투여하거나 경추탈구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 실험자는 실험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치를 강구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안전관리 및 오염방지) 물리학적 또는 화학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시료 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실험자는 관리자와 협력하여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, 사육환경의 오염에 의한 다른 동물로의 장해 방지 및 실험시설 주변으로의 오염방지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이용자 규정

제16조(이용 원칙) 동물실험실 이용자는 제5장의 실험동물 이용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이용자의 자격) 동물실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

당하는 자로서 실험동물실장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연세대학교 소속 교직원 및 대학원생으로 이용자 교육을 이수한 자
2. 연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및 위촉 연구원
3.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)로부터 이용을 허가받은 자

제18조(이용자의 책임) ① 사용자는 동물사육 시설사용에 관한 기본지식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및 장비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동물실험실내 시설 및 장비의 고장, 파손 그리고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③ 실험 종료 후 질서와 청결유지의 의무가 있다.

제19조(이용시간) ① 동물실험실 이용은 정상 근무시간에 이용한다.

② 정상 근무시간 이외 (오후 6시 이후, 주말 및 공휴일)의 이용 시에는 실험동물실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

## 제7장 시설의 이용

제20조(사육시설의 이용) 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)의 심의를 거친 후 ‘동물실험신청서’에 입각하여 시행한다.

② 사육시설 이용자는 동물실험실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실험동물의 취급 및 실험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실험동물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8장 실험동물의 이용 및 절차

제21조(실험동물의 반입과 반출) ① 사육실내에는 SPF(Specific pathogen free, 특정 병원체 무감염) 동물만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Rat, Mice, Rabbit의 반입 시에는 구입처 혹은 분양처에서 발급받은 유전학적,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결과가 기술된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③ 동물사육실에서 반출된 동물은 원칙적으로 재반입을 금지한다.

④ 중동물(개, 돼지)반입 시에는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을 권장하며,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물실험실에서 사용자 부담 하에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.

⑤ 외부에서 구입 또는 반입하는 동물이 시설 내에서의 사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장은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.

⑥ 동물의 탈출 및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출의 절차는 「실험동물 반출 SOP」에 따라 실시한다.

- 제22조(실험동물의 검역 및 순화 등) ① 반입하는 모든 실험동물은 1주일간의 검역 및 순화기간을 두어야 하며, 검역이 완결된 것을 확인한 후 실험에 이용한다.
- ② 검역 및 순화기간의 조정은 IACUC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③ 필요한 경우 실장의 판단 하에 비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

- 제23조(실험동물의 관리 및 배치) ① 실험동물의 관리는 별도로 마련한 「사육관리 SOP」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실험 성격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실험동물의 배치는 실험의 성격 및 사육실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며 일부 이용자에게 공간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는 동물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이용자의 실험대상 이외 다른 실험자의 동물을 임의로 접촉하는 것은 금한다.
- ④ 검역 및 순화가 끝나고 실험자에게 공급된 후부터 실험동물의 관리는 실험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실험의 성격상 특별한 경우에는 실장과 협의하여 담당업무를 별도로 분담하고 조정할 수 있다.

- 제24조(실험동물의 특수처치) ① 실험동물의 처치 및 부검 시에는 제5장의 실험동물 이용윤리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특수처치실험의 성질에 따라 실험동물실에서 실험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방사선동위원소의 사용 시에는 교내 방사선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「방사선안전관리규정」 등 해당 법규에 따라 실험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④ 동물의 실험 처치는 실험실 또는 수술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육실에서의 임의의 실험 처치를 금한다.
- ⑤ 시설에 부적합한 동물(질병발생 및 폐사된 동물 등)이 발생할 경우 해당 동물이 검역 및 사육 또는 실험 중이라 할지라도 이용자에게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제25조(실험동물의 사체 및 폐기물 처리) ① 실험동물의 사체는 소정의 포장지에 봉하여 소속, 성명, 처리일자, 동물종 및 계통, 수량 등을 기재한 지정된 태그를 부착하여 사체보관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실험동물의 사체 및 폐기물의 처리는 관련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따른다.
- ③ 실험자(이용자)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폐사동물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타 동물에의 전염이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하고 남은 약품이나 소모품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.

## 제9장 기 타

제26조(기타) ①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은 동물관련 생물의학연구에 관한 국제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기타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「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88-39), 「실험동물사용 및 사용관리 규정」(식품의약품 안전청 예규 제15호) 등의 관련법규와 ILAR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(미국 NIH)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27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(1)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(2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